고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요약〉

-홍 보 부-

◇…환경부는 지난 9월18일 축산폐수 방류수 수질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해 축산폐수를 처리할 경우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상의 초지 또는 농경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환경부령 제30호)했다.

본지는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환경부가 개정·고시한 동법 시행 규칙중 축산폐수 관련조항 중 주요 부분만 발췌하여 요약했다. 〈편집자 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축산폐수배출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범위는 축사·먹이방·착유실·분만실 및 운동장으로 한다.

제6조(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2.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3. 물리·화학적 방법
4. 퇴비화방법 또는 저장액비화방법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방법을 조합한 방법

제8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2.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3. 물리·화학적 방법
4. 퇴비화방법 또는 저장액비화방법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방법을 조합한 방법

제9조(오수정화시설 등의 방류수 수질기준)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합병정화조·단독정화조·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3조(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상의 초지 또는 농경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56조(축산폐수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7일 이내에 설치완료된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부합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준공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부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적합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부적합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50일(동절기의 경우 70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폐수를 퇴비화방법 또는 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초지·농경지 등에 퇴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자는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축산폐수를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축산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는 행위
3. 축산폐수를 오염되지 아니한 물로 희석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거나,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오염되지 아니한 물로 희석하여 방류하는 행위. 다만, 축산폐수처리공법상 희석하여야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퇴비화방법에 의하여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경우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를 살포하거나 타인에게 주는 행위. 다만,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퇴비화방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퇴비를 퇴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공수역 등에 버리는 행위
6. 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하여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경우 저장조를 거쳐 저류조에 저류되지 아니한 것을 살포하거나 축산업자가 확보한 초지 또는 농경지외의 장소에 살포하는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류수수질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③이 규칙 시행 당시 영 제3조제1항제1호항목의 지역에 설치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 제3호의 기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운영중인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53조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초지 또는 농경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1〕 방류수수질기준(제9조제1항관련)

1.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기준(표1)
2.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가. 199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기준(표2)
   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기준(표3)

〔별표 10〕축산폐수처리시설 및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기준(제53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관련)

1. 구조물의 천정·바닥 및 벽은 누수되거나 빗물·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은 토압·수압·자체중량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부식 또는 변

〈표1〉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기준

구분 \ 항목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부유물질량 (mg/l)	대장균균수 (개/ml)	기타 (mg/l)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기준	30 이하	-	30이하	-	총질소 : 120이하 총 인 : 16이하
1999년 1월 1일부	30 이하	50 이하	30이하	3,000이하	총질소 : 60이하

〈표2〉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구 분 \ 항 목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50 이하	350 이하
	부유물질량 (mg/l)	50 이하	350 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150 이하	500 이하
	부유물질량 (mg/l)	150 이하	500 이하

비고 : 이 표에서 특정지역은 영 제3조제1항제1호각목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으로 한다.

〈표3〉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기준

구 분 \ 항 목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50 이하	350 이하
	부유물질량 (mg/l)	50 이하	350 이하
	총 질소(mg/l)	260 이하	-
	총 인(mg/l)	50 이하	-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150 이하	350 이하
	부유물질량 (mg/l)	150 이하	350 이하

비고 : 이 표에서 특정지역은 영 제3조제1항제1호각목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으로 한다.

형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점검·보수, 오니·스컴 및 찌꺼기의 청소를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펌프 등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구조로 하되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축산폐수의 배관은 막힘·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가스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고 발생가스가 충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악취가 발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축산폐수의 유입량이 증감되어도 처리시설에는 일정량이 유입되어 처리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생물학적, 물리·화학적처리방법의 경우에 한함).

9.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축분을 1월이상(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월이상) 건조·발효할 수 있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효시설 등은 수분의 증발이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퇴비화방법의 경우에한함).

10. 축사에서 발생된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저장조 및 저류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저장조는 축산폐수를 6월이상, 저류조는 축산폐수를 1월이상 저장 및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저장액비화방법의 경우에 한함). 養豚